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,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1명)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(4급 1명, 4·5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)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9. 4. ~ 9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후단 중 “109명”을 “111명”으로 한다.

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082”를 “1,09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72”를 “1,08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029”를 “1,039”로 한다.

별표 3의2의 제목 중 “제33조제4항, 제33조의2제4항, 제34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”을 “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생 략)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109명</u> 을,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 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 을 그 상한으로 한다. ③ (생 략)	제27조(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111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4조(공공윤리정책과) ① 기획 재정부 공공정책국에 「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윤리정 책과를 둔다. ② 공공윤리정책과에 과장 1명	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

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

2.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

3.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공기업·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세포탈, 회계부정,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평가 지원

6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

7.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
8.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
9.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
10. 윤리경영·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·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
11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·고등학교 졸업 출신자·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
12. 여성·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
13. 「자격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
14. 탄력근무제·원격근무제 등

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

15.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
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
원

④ 공공윤리정책과에 두는 공무
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공공혁신기획과) ① 기획
재정부 공공정책국에 「행정기
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
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
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
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혁신기
획과를 둔다.

② 공공혁신기획과에 과장 1명
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
다.

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
다.

1.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·

이행점검 및 지원

2.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
략 수립 및 추진

3.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
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·

<삭 제>

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 · 지원

4. 공공기관 고객현장 및 고객 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

5.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 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

6.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

7.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 · 평가 및 후속조치

8.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 · 선정 · 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 · 보급

9.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

10. 공공기관의 투명 · 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

11.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

12.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

13.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

14.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

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

15.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
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
리 및 지원

④ 공공혁신기획과에 두는 공무
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82</u>	<u>1,092</u>	+10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072</u>	<u>1,082</u>	+10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029</u>	<u>1,039</u>	+10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7